

대전보건대학교 장애학생 지원 규정

2011. 07. 01. 최초제정	2021. 11. 01. 부분개정
2012. 08. 01. 부분개정	2024. 03. 01.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24. 10. 01. 부분개정
2017. 05. 01. 부분개정	2025. 02. 01. 부분개정
2018. 02. 01. 부분개정	2026. 04. 01. 부분개정
2020. 01.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79조의2에 의거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과 시설·설비 등을 지원하여 고등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2.01.>

제2조(조직) <삭제 2018.02.01>

제3조(장애학생의 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의1(장애학생 차별금지) ①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재학 중인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법령이 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6.04.01.]

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3조의2(조직) ①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25.02.01.>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센터는 학생·취업처에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취업처장이 겸직하고, 임기는 학생·취업

처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학생·취업처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별도로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01.01., 2025.02.01.>

③센터의 장은 센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

④센터에는 장애학생 지원업무 담당자를 둔다.<신설 2018.02.01.>

제4조(기능)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 학습권 보장 및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항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02.01>

①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②장애학생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③교수학습·생활복지·상담·진로·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장애학생 지원정책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장애학생 도우미 및 장애학생 관련 자원봉사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⑥장애학생의 지원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⑦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⑧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1.11.01.>

⑨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특별지원위원회<개정 2025.02.01.>

제5조(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5.02.01.>

①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②장애학생의 개인별 교육 지원 계획<신설 2025.02.01.>

③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④위원회 제 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법으로 정하는 사항

⑥기타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02.01.>

②특별지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11.01., 2024.03.01., 2024.10.01., 2025.02.01.>

1.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각 목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나. 재학 중인 장애학생

다.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3. 이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생팀 담당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11.01.>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02.01.>

②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01.01.>

③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토의내용과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신청) ①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총장에게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청구) ①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법을 위반하는 총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별지 제1호 서식)를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총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서면의결)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교직원이나 전문가, 학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부서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부서·학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간사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장학금 지급 및 평가

제16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평가) ①장애학생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요인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년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장애학생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이용하며,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연계되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③평가 및 설문조사는 학생·취업처 평가지침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2020.01.01.>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6조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3조의 1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심 사 청 구 서			
① 사 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③ 피 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 취지			
⑥ 재심청구의 이유			
⑦ 기타 입증자료			
⑧ 근거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p>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p>			

[별지 제2호 서식]

심 사 결 과 통 지 서			
① 사 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③ 피 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 결과			
⑥ 근거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		